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 - 18호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9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로 인하여 지역경제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개성공단에 입주기업 중 인천 지역 업체의 경영악화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5조)

○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경영정상화 지원 및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안 제8조)

○ 명부작성 및 지원 사업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3.19(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2,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성공단”이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를 말한다.
2.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란 본사나 공장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의 사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단에 설립한 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현황 및 피해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표

3. 경제 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및 임원

4. 남북한 교류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경제 및 남북한 교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원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며, 안건의 자문이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협의회 회의 소집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경영정상화 지원) 시장은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차단되는 경우

2. 조업 중단,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제8조(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등) ① 시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애로창구 운영

2.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간담회 개최

3.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상시 소통 시스템 구축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전담할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명부 작성 등) 시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명부를 작성한다.

제10조(지원 사업 확대) 시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군·구 및 공공기관 등과 협조 및 연계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2조(조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개체자금 등 지원

나. 관련조문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제7조(경영정상화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긴급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 300백만원

833백만원/업체당 × 18개사 × 2%(이차보전율)

*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나 83%까지 추산)

2) 산업확충자금 이차보전금 : 400백만원

2,500백만원/업체당 × 8개사 × 2%(이차보전율)

* 업체당 최대 30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나 전체기업 중 약 8개사 공장확장비용 추산

3) 연도별 비용추계

가)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융자기간 최대 3년(연간 700백만원)

나. 추계 결과

1) 총 사업비(시예산) : 2,100백만원 (700백만원 × 3년)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700,000	700,000	700,000			2,100,000
	소계	700,000	700,000	700,000			2,100,000
재원 조달							
시비	소 계	700,000	700,000	700,000			2,100,000
	일반회계	700,000	700,000	700,000			2,100,000

4. 작성자

경제산업국 산업진흥과장 구 영 모